

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손 자 용

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6월 3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7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2항에서 “주민등록법상”에가 “가족관계등록부상 및 주민등록법”상으로 변경되고, 같은법 제8조제3항에서 장애인용 차량의 대체취득시 처분기한이 30일에서 60일로 변경되어 이에 맞도록 감면조례를 개정하고,
-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서 자동계좌이체 신청시에는 150~500원, 자동계좌이체 및 전자송달 모두 신청시에는 300~1,000원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만큼 세액공제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감면 조례 신설하고,
- 지방세법 제13조의 사치성재산 인용조항이 지방세법 제3항에 5항으로 변경됨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(안 제2조)
 - 감면대상

-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직계비속과 혼인한 외국인이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차량도 감면대상에 포함
 - 장애인 감면차량 대체취득 시 일시적 2차량이 된 경우 종전 차량의 처분기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
 - 감면내용 : 취득세 감면
 - 감면기간 : 2011. 12. 31일까지
-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 (안 제21조의 2)
- 감면대상 :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세목
 - 감면범위
 - 자동이체 신청시 : 건당 150원
 -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시 : 건당 300원
 - 감면기간 : 2011. 12. 31일까지
- 사치성재산 인용조항 정비 (안 제23조)

4. 검토결과

가. 도세감면조례 개정 근거

-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
 -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2항
 - “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(배

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)의 장애인의 배우자, 장애인의 직계존·비속,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, 장애인의 형제·자매의 명의"로 된 자동차를 추가.

-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3항

- 장애인용 차량의 대체취득시 처분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변경

○ 자동계좌이체 신청시 감액

-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2조의2

- 자동계좌이체 신청시에는 150~500원, 자동계좌이체 및 전자송달 모두 신청시에는 300~1,000원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만큼 세액공제

○ 지방세법 제13조의 사치성재산 인용조항이 지방세법 제3항에 5항으로 변경됨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

나. 조례개정 내용

○ 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 : 상위 법에 따라 개정

○ 자동계좌이체 신청시 감액

- 자동이체 신청시 : 건당 150원
-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시 : 건당 300원
- 감면기간 : 2011년 12월 31일까지

○ 사치성재산 인용조항 정비 :

- "제13조제3항"을 "제13조제5항"으로 변경

다. 종합의견

금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과 지방세법 개정
에 따라 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의 범위를 확대하고, 자동계좌
이체 신청시 세액을 공제해주고, 사치성재산 인용조항을 지방세
법 개정애 따라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다만, 부칙에 제21조의2 개정규정을 「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
령」 시행일인 2011년 3월 29일 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1
일부터 적용하도록 한 사유와, 이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1년 12
월 31일까지로 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.

붙임.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